

보도자료

보도자료

제 목	관세청, “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” 시행	등록일	2009-09-28
작성자	박헌사무관	담당부서	통관기획과
		조회수	49

관세청, “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” 시행

-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, 관세환급 특별지원 -

▶ 관세청(청장 허용석)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“민생안정 및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”을 수립/시행한다고 밝혔다

◎ 이번 대책은 ‘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’, ‘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

▶ 추석연휴 중에도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

◎ 연휴 3일간을 “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”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「특별 통관지원팀」을 편성

-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및 전자통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여 긴급한 수출입물품 통관수요에 적극 대비

◎ 특히, 추석 연휴기간(10.2~4)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을 해소키 위해

- 심야/새벽시간에도 전화,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

- 수출화물을 미선적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선(기)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토록 조치할 방침

◎ 아울러, 연휴기간에도 수출입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/관세사/운송업체/선박회사/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/운영할 계획

▶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

◎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9.21(월)~10.5(월)까지 15일간을 “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”으로 지정

◎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,

-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연휴기간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

는 「先환급 後심사 체제」로 돌입

※ (관세환급) :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/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

◎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0.1(목) 16:30 이후에는 은행에서 환급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에 각별한 당부를 요청

첨부파일

[파일받기안내 >](#)

한줄 답변을 할려면 실명인증을 하십시오. [실명인증바로가기](#)

- 현재글	관세청, "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" 시행	2009-09-28
< 이전글	9월의 관세인 선정 '150억대 인체시술...	2009-09-28
< 이전글	관세청 연수원, IT 국제교육훈련센터로 ...	2009-09-23

[글목록 >](#)



만족도조사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
☆ ☆ ☆ ☆ ☆ ☆
 ☆ ☆ ☆ ☆ ☆
 ☆ ☆ ☆ ☆
 ☆ ☆ ☆
 ☆ ☆
 ☆

의견입력

[참담기 >](#)